

인천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736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7361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가단2558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정석원, 송미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지혜

변론종결 2021. 8. 10.

판결선고 2021. 9.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가단2558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D 체결된 양도계약,
-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E 체결된 양도계약,
-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된 양도계약을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각 이 판결 선고를 원인으로 하는 특허권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를 원인으로 하는 실용신안권 명의변경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내지 제3행을 『2) C은 자신이 발명한 “F”에 관하여 P 피고와 공동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E 별지 제2항과 같이 특허권자를 피고로 하여 특허권 등록을 마쳤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4행의 ‘결과가 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각주 1)을 추가한다.

『1) C이 별지 제1, 2항 기재 각 특허에 관한 권리를 특허권 등록 이전에 피고에게 양도하였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능력 있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고안을 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권리로서 등록 전까지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이 가능한 재산권인바,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을 구성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독립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실용신안권이 사해행위로 이전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현선휘, 판사 백규재

별지